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33조).

II. 검토의견

1. 의료지원 의료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34조)

현행 제34조제1항¹⁾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의료지원 의료기관으로서 보훈병원을 포함하는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조 제5항²⁾은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1) 제34조(진료)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4조(진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1.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감면진료 의료기관으로서 보훈병원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34조제1항과 동조 제5항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있으나, 세 개 이상의 종류를 한 문장으로 나열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사입법례³⁾를 참고하여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한편, 유사한 내용의 관계 법률⁴⁾이 상정되어 있어, 체계상 통일성을 맞추어 수정의견을 제시함.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3. 삭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6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6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60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6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60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6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DD20602)

[안 제34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4조(진료)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가의 의료기관</u>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u>보훈병원</u> (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u> 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진료) ① ----- ----- ----- ----- ----- ----- <u>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u> ----- ----- ----- ----- 1. <u>국가의 의료기관</u>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u>보훈병원</u> (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u>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u>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u> (이하 “ <u>공공단체의료기관</u> ”이라 한다)

2. 위탁진료 지원 규정 포함을 위한 적용례 수정(안 부칙 제2조)

현행 제34조의2⁵⁾는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의료지원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위탁진료와 감면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34조의2는 제34조와 함께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있음에도, 부칙 적용례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면지원 적용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재난상황에서의 위탁진료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2조 수정의견을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부칙 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u>제34조</u>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u>제3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34조의2</u>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5) 제34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4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